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사 비공개 대상 제한〉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74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이수진 · 허성무 · 김영배 · 정진욱 · 윤종균
김영환 · 전현희 · 권칠승 · 조계원 · 김 윤 · 강선우
소병훈 의원(13인)

2. 제 안 일 : 2025. 1. 16.

3. 회 부 일 : 2025. 1. 17.

※ 의안번호 : 757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

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 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제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한하는 한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¹⁾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u>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u>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u>

1) 개정안 의안원문의 본문부 개정문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여 대표발의의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²⁾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되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1항³⁾에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②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③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④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실 확인을 거쳐 수정하였음. 또한 개정안은 항이 하나뿐인데 ‘항 번호(①)’를 두고 있으므로 항 번호도 삭제하여야 함.

-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의결로써 비공개할 수 있음.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음.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상정 안전에 대한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전원위원회는 총 224건의 안전 중 97건(43.3%)을 비공개하였고, 상임위원회는 총 357건의 안전 중 118건(33.1%)을 비공개하였음.

[표-2] 최근 3년간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상정 안전 비공개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공개 안전수(비율)	비공개 안전수(비율)	계
전원위원회	127(56.7)	97(43.3)	224(100.0)
상임위원회	239(66.9)	118(33.1)	357(1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의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 비공개를 엄격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회의가 공개될 경우 단순히 우려되는 수준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외적으로 비공개 논의를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② 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한다는 취지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의 관행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⁵⁾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및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 제한하고 이를 법정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공개 사유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⁶⁾도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사항은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불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항의 추가 여부를 포함하여 비공개 사유의

5)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성 강화2: 투명성 제고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018, pp.86~89

6)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정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3] 개정안 및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 비교

개정안상 비공개 사유	현행 운영규칙상 비공개 사유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의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의 비공개 규정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제2항의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인데,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에서 이미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듭하여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실익은 적어 보이고,

②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이 비공개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쉽고 간명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7